



제 429국회 (정기회)
제 3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과후과정 운영의 근거 마련 〉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33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과후과정의 운영 근거 규정 마련	2
2. 개정안 부칙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 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7. 11.

3. 회 부 일 : 2025. 7.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규학습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할 수 있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육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유치원에서의 방과후 과정은 「유아교육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초·중·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학교나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늘봄학교는 관련 정책이 법률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바,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초·중등학교에서 방과 후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과후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방과후과정의 운영 근거 규정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방과후과정의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의3(방과후과정) ① 학교의 장은 정규학습시간 전후 또는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방과후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방과후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과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방과후과정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

나. 검토의견

-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후 내부 교원 또는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추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학생 및 학부모가 희망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유·무상으로 참여하는 ‘방과후과정’이 운영되고 있음¹⁾.
-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내에 정규수업 이후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인력을 마련하여 희망하는 학생이 이용하는 초등돌봄교실 제도도 병행하여 운영 중이며, 2024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을 대상으로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늘봄학교’로 통합하여 운영 중임²⁾.

[늘봄학교 참여 현황]

기준일	초1			초2			초1·2 합계		
	전체	참여	참여율	전체	참여	참여율	전체	참여	참여율
'25.3.28	325,290	274,387	84.4%	353,215	277,195	81.3%	678,505	551,582	81.3%

자료: 교육부 제공

1) 통상 방과후학교를 통해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방과후과정이라고 지칭함.
 2)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의 경우 공식적인 돌봄교실 참여 현황이 미비하다고 함.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

기준일	초3			초4			초5			초6		
	전체	참여	참여율	전체	참여	참여율	전체	참여	참여율	전체	참여	참여율
'24.4.30	427,166	229,075	53.6%	422,581	201,866	47.8%	423,369	170,326	40.2%	467,772	155,432	33.1%

자료: 교육부 제공

기준일	중			고		
	전체	참여	참여율	전체	참여	참여율
'24.4.30	1,332,850	272,539	20.4%	1,304,325	379,042	29.1%

자료: 교육부 제공

□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경우 전체 학생 중 늘봄학교 참여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의 경우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20% 이상, 고등학생의 경우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30% 가까이 나타났는바, 공교육 중에서 선택사항인 방과후학교에 대하여 학생들의 참여율이 적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33.1%, 5학년의 경우 40.2%, 4학년의 경우 47.8%, 3학년의 경우 53.6%, 2학년의 경우 81.3%, 1학년의 경우 84.4%로 저학년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하여 운영 중인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음³⁾.

□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을 포함시키고 있고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3)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늘봄학교 참여율을 말하며, 통계기준일이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의 경우 다름.

4)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

관한 특례로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 및 방과후교육
활성화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⁵⁾⁶⁾,

방과후과정 운영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의 범위 내에 포함된
다고 해석하더라도, 방과후과정의 운영 방향성이나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의무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교
육재정교부금법」의 경우 특별교부금의 교부대상과 교부금 비율을 규
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인 것으로 보임⁷⁾⁸⁾.

□ 동 개정안은 ① 돌봄과정을 포함한 방과후과정 운영의 명시적 법적 근

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교부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
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6)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지방재정교부금(보통)으로 방과후과정이 지원되고 있
는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별표 2] ‘기준재정수요액의 추정항목·추정단위·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서 추정항목 중 ‘7.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
음.

7) 2025년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늘봄학교’사업 및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며(예
산 총 3,350억원), 지방재정교부금(보통)으로는 방과후과정이 1조 5,521억원 지원되고 있음.

8) 그 밖에 국가교육위원장이 정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고시 제2024-3호)에서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시 원칙으로 ‘방과 후 활동’ 또는 ‘방학 중 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음.

[별책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Ⅱ.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1. 설계의 원칙

가.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며, 학생의 특성
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5)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방과 후 활동 또는 방학 중 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거 마련(제1항), ② 국가가 제도의 틀(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지자체(교육감)가 세부사항(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마련(제2항), ③ 국가 및 지자체(교육감)의 지원 등 계획 수립·시행(제3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보다 방과후과정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방과후과정 운영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⁹⁾¹⁰⁾.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 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방과후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3항에서는 방과후과정 지원과 관련한 계획 수립 주체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제2항과 달리 교육감의 계획 수립시 명시적인 제한이 없는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모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이재명정부는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는데 (2025.09.17.), 동 국정과제 중에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9) 또한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목표와 운영 체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운영 특례, 강사 검증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학교의 근거를 담은 방안과 별도의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10) 기획재정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다는 입장임.

가 있는바, 주요내용으로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프로그램·강사 검증을 강화하여 방과후학교 체제 확립하고자 하며,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마련·확산하고, (가칭)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확충하여 돌봄·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¹¹⁾,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돌봄·교육을 제공할 계획임¹²⁾.

□ 또한, 교육 현장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다수의 반대의견이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한 의견]

<시·도교육청>

- (대구·울산) 이견 없음
- (부산·인천·대전·충북·경남) 반대
 - 부산: 방과후학교의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질 우려
 - 인천: 돌봄은 지자체 소관, 정규 교육과정 운영 저해 가능성, 학교 부담 증대 가능성
 - 광주: 학교·지역별 자율 운영이 바람직, 필요 시 별도 법률 마련
 - 대전: 학교 부담 증대, 사교육 업체 개입 여지 확대, 자율 참여 원칙 침해 가능성
 - 충북: 방과후과정의 운영 주체를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로 분산할 필요
 - 경남: 방과후과정의 효과 부족, 학교 부담 증대
- (충남) 기타(별도의 방과후학교의 근거 법률 마련이 더 적합)

11) 국정과제 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실천과제 2.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12) 교육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향후 방과후과정에 대한 재정 소요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할 계획으로, 2026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교육부의 “범부처 협업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사업(각 부처가 초등학교 저학년에 맞는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관리 및 성과분석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대한 예산 및 부처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

<관련 단체>

- (교사노조연맹) 방과후학교의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질 우려
- (전교조*) 방과후과정을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면 정규 교육과정의 가치 훼손 우려, 돌봄의 지자체 이관 필요
 - * 경기지부, 충남지부, 경남지부

자료: 교육부 제공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에게 방과후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과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운영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